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사업 범위에 복지·수익사업을 추가하고 공제 사유가 발생한 연락불가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83호, '23.7.4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익 사업계획 보고규정을 정하고 관계기관에 정보 요청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자구 수정 (안 제34조제1항, 제37조제1항, 제38조제1항, 제38조의3)
- 나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자금의 회계 구분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 삭제 (안 제36조제1항)
- 다. 중앙회가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(안 제38조의4)

라.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 요청시 당사자에게 고유식별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안 제42조의2제2항제4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법 제117조제1호”를 “법 제117조제1항제1호”로, “법 제118조제1호”를 “법 제118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8조제1호”를 “법 제118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법 제118조제2호”를 “법 제118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8조의3 중 “법 제118조의4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””를 “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”로 한다.

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4(수익 사업계획의 보고)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가 끝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목적 및 내용
2.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
3. 수익의 창출 및 활용 방안
4. 그 밖에 수익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2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3. 7. 4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 가입 등)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법 제117조제1호</u> 에 따른 공제부금(이하 “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부금”이라 한다)을 낼 것과 <u>법 제118조제1호</u> 에 따른 공제금(이하 “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(이하 “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계약”이라 한다)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.	제34조(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 가입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17조제1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 <u>법 제118조제1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~ ③ (생 략)	②~ 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의 구분 관리 및 공제운용계획) ① <u>중앙회는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자금”이라 한다)을 관리 · 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	제36조(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의 구분 관리 및 공제운용계획) ① <u><삭 제></u>
②~ ③ (생 략)	②~ ③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) ① <u>법 제118조제1호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 1.~ 4. (생략) ② (생략) 제38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) ① <u>법 제118조제2호</u>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② (생략) 제38조의3(제공 요청 과세정보) <u>법 제118조의4제1항</u>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”란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1.~ 6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7조(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) ① <u>법 제118조제1항제1호</u>에서 ----- ----- -----. 1.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38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) ① <u>법 제118조제1항제2호</u>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38조의3(제공 요청 과세정보) <u>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----- ----- -----. 1.~ 6. (현행과 같음) <u>제38조의4(수익 사업계획의 보고)</u> ① <u>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익 사업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제2항 각 호의 중</u>
--	---

제4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 ② 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	<u>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역 또는 유형 등을 달리하여 신규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가 끝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1. <u>사업의 목적 및 내용</u> 2. <u>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</u> 3. <u>수익의 창출 및 활용 방안</u> 4. <u>그 밖에 수익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제42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4 - 7857